

지회운영 규정

개정 1983.01.09
" 1984.10.17
" 1991.10.31
" 1994.11.21
" 2001.02.22
" 2003.02.06
" 2004.01.30
" 2010.01.29
" 2013.05.30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

정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 산하 지회운영을 활성화하고, 지역별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범위) 지회 산하 지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3조(명 칭) ① 지회의 명칭은 "(사)한국양봉협회 서울특별시지회, ○○광역시지회, ○○도지회"등으로 해당 시도(명칭)지회라 칭한다.

제 4조(사무실) 지회사무소는 각 시·도청 소재지에 둘 수 있다.

다만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으며, 시·군·구 단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5조(업무구역) 각 지회의 업무구역은 시·도 행정 단위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써 그 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 6조(사업) 지회의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 내 회원관리 및 신규 회원가입 촉진
2. 지역 내 회원의 권익보호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부대행사
3. 회원을 위한 교육 훈련
4. 양봉농가를 위한 홍보 및 계도 사업
5. 협회로부터 위촉 위임받은 사업 수행

제 2 장 회 원

제 7조(회원자격)

- ① 지회 회원은 제5조에 정한 구역에 주소를 둔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다른 구역으로부터 주소를 전입해 온 회원은 관할지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8조(회 비)

- ① 회원은 협회총회에서 부과한 연례 회비를 회계연도 내에 지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당월분의 수납금을 익월 10일 이내에 협회 지정 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단, 회계 연도를 넘길 수 없다.
- ③ 협회는 제2항의 지회별 수납회비를 4/4분기별로 합계금을 정산하여 협회의 당기 예산기준에 의한 지회운영 할당금을 각 지회에 교부한다.

제 9조(회원의 결격사유) 회원은 정관 제10조 및 "가입금 및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" 제5조에 의거, 정관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복권되기까지 정관 제8조의 회원권을 상실한다.

제 3 장 임 원 및 대의원

제10조(임원의 정수)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지회장 1명
2. 운영위원 7인 이내(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다)
3. 감사 2인

제11조(임원선출)

- ① 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, 단 지회장 선출 후 10일 이내에 전임 지회장과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소속 지부장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협회 총회 의결권과 투표권을 부여할수 있다.
-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운영위원 및 지부장을 겸직할 수 없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직무)

- ① 지회장은 정관 제32조의 정함에 따라 협회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,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주요 업무를 의결하며, 지회장의 유고 시에는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③ 사무국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를 전담한다.
- ④ 감사는 매 사업연도에 지회의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4조(지부장 및 대의원)

① 정관 제32조의 정함에 따라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의 지부 업무를 총괄하며, 지부회원의 연례 회비를 기일 내 징수, 지회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② 지부장과 대의원은 지부별 총회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한다.

③ 전항에 의하여 지부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장이 없을 때는 그 지부소속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지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부장과 대의원을 지명 선출할 수 있다.

단, 협회장의 인준 신청 시 인준신청 서류에는 운영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.

1. 지부 회원 중 당년도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완납회원
2. 위 1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없을 경우에 한해 유권회원

제15조(대의원 인준신청)

① 제14조에 의거, 선출된 지부장과 대의원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부총회 회의록 사본 1부.
2. 이력서(사진첨부) 1부.
3. 취임승낙서 1부.

② 지회장은 소속 대의원 인준 대상자의 연명부와 인준신청서를 작성하고 위항 제2,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지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
2. 지회의 결산안 심의
3. 지부운영에 관한 조정 및 협의
4. 지회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5. 지회총회에 부의할 사항
6. 기타 지회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제17조(운영위원회 소집)

-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지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직원의 임명) 지회에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총 칙

제19조(총 회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연 1회,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후(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 이내)에 개최하여야 하며, 개최일 7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 지회장이 소집한다. 단, 15개 시·도 지회별 총회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 (지회총회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회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.)
-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감사 2인이 지회 업무개선을 요구하고 회원 1/3 이상이 그에 동의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
 2. 소속 대의원 2/3이상이 회의 목적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첨부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

제20조(총회 부의사항)

- ①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지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결정
 2. 지회 결산안의 결정
 3. 감사보고의 승인

4. 임원 선출과 해임

5. 기타 지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전항 제1호, 제2호의 사항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의결권 행사 및 의결방법)

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임원 해임의 경우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2조(회의록) 총회 의사에는 진행 경과사항과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지회장과 서명날인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5 장 회 계

제23조(회계 연도)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4조(예산과 회계운용) 지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운용은 협회규정에 따른다.

제25조(재 정) 지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

1. 협회로부터 교부 받은 연례회비 할당금 수입
2. 찬조금 및 보조금
3. 기타 수입금

제26조(서류비치 의무)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정관과 제 규정
2. 회의록

3. 회원 가입원서 및 회원명부
4. 회비수납대장
5. 지회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

제 6 장 지 회 감 독 권

제27조(협회장의 감독권)

- ① 협회장은 지회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협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회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8조(업무보고) 지회장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록을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9조(해산과 청산)

- ① 지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.
 1. 총회에서 출석 회원 2/3이상의 동의로써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
 2. 유권회원수가 30인 미만일 때
- ② 지회 해산을 위한 청산인은 협회장이 행하며 해산 지회의 모든 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과 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"지부운영규정", "분회 운영규정"은 폐기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현재, 구 "지부운영규정" 및 "분회운영규정"에 의거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지회장 및 지부장과 대의원(1991년 1월 11일 이사회의 인준은 받은자에 한한다)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규정에서 적용 받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